

다산포럼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소정 근로시간(所定勤務時間)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해진 노동 시간을 말한다. 대학 강사가 대학과 맺은 임용 계약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통상 강의시간만을 지정해 왔다. 강의시간이 아닌 시간에 강사는 강의 준비와 학생 평가 및 상담을 수행해야 하며, 강의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강의시간이 아닌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을 측정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여 강사의 임금을 강의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정착된 것일 뿐, 강의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 것은 아니다.

최근까지 법원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판결을 내려 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통상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강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강사의 실제 노동시간을 강의시간의 세 배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주당 5시수 이상 강의해온 강사들은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늘상 승소해 왔던 것이다.

왜 강의실 밖의 노동시간을 강의시간의 두 배밖에 산정하지 않아 4시수를 받는 강사들이 퇴직금을 적용받

대학 강사의 소정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을 수 없는지 명쾌한 설명은 없었지만, 적어도 대학 강사의 강의시간이 소정 근로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1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강사가 대학과 맺은 계약서에 표기된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겠다고 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의 유급휴가 조항도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을 청구한 강사에게 강의실 밖에서 수행하는 노동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계약서에 표시된 강의시간만 노동시간으로 보겠다고 한 것은 기존 판례에 비해 퇴행하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다. "(강의 준비와 성적 평가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 하에 이를 일정 시간으로 정하여 강의시간과는 별도의 근로시간으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그러한 합의를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강사가 대학과 자유롭고 평등하게 계약서 조문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말이다. 물론 모르는 소리다. 당연히 승소할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는 강사도 수만 명 중 수십 명에 불과한데, 계약서 조문에 왜 실제 노동시간이 아닌 강의시간만 적는지 따질 수 있었던 사람이 도 대체 몇 명이 될 것인가. 사실 단 한 사람의 강사도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적은 계약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서 퇴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판사가 대학의 횡포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강사의 처지를 외면하는 퇴행적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판결문에는 또 이런 대목도 있다. "(승려되어 있으므로) 강의 준비 및 학사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강의해온

강사는 별도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이다. 정말 몰정 모르는 소리다. 아무리 숙련된 강사라도 매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채점하지 않으면 강의 평가 폭락과 이의 신청 폭증을 피할 수 없고, 다음 번 강사 임용에서 탈락하기 십상이다. 아무리 숙련된 판사라도 매번 최선을 다해 판단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퇴행적 판결로 혼돈의 결과를 파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적힌 강의시간만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수업 준비와 보고서의 피드백 및 중간·기말고사 평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앉혀 놓고 자습시키면서 교탁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학생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습하는 학생들 앞에서 학생 하나하나 불러내 교탁 옆 의자에 앉혀 놓고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강의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연구도 강의실 교탁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대학생들이 강의시간에 자습을 하는 상황이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희극을 막기 위해 앞으로 현장에서 강사들은 강의시간 외의 노동시간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지난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타협을 이룬 2019년 개정 강사법의 결과 5시수 이상 강의를 하는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도 다시 혼란에 빠질 소지가 있다. 대학 강의의 질반을 강사가 맡아 왔다. 이미 얻어낸 퇴직금을 뺏기면 법정 다들 등의 사회적 비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의 오판을 대법원이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의 고등교육은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사법부가 고등교육 붕괴의 한 요인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NGO 칼럼



서석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지원팀장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대체할 물질도 없다. 또한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헌혈을 통해 채혈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

2019년 이전에는 연중 혈액 보유량이 통상적으로 3~5일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5일분)의 절반 수준인 2~3일분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수혈용 혈액을 전부 공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수술 일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지정 헌혈

지역 내 혈액 수급 안정화 위해 헌혈 참여를

이 급증했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1년 중 혈액 수급이 특히 어려워지는 시기는 각급 학교가 방학에 돌입하고 지역민의 활동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동·하절기이다. 유난히 출고 눈이 많이 왔던 올겨울의 경우, 단 2주 만에 혈액 보유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금도 헌혈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학교나 지역 단체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에서 전역한 이들은 헌혈을 접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거나 사회로 돌아왔고, 이는 그들의 헌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 내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작년 전체 헌혈자의 57.8%가 10대~20대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시기의 헌혈 경험에 따라 추후 정기 헌혈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직접 헌혈의 집까지 찾아가야 하는 개인 헌혈은 정기 헌혈자가 아닌 이상 선뜻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군부대·사회단체 등 지역 내 단체의 헌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지역 내 혈액 수급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필수 요건이다.

더불어 개인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도 필요하다. 작년을 기준으로 헌혈의 집에서 헌혈에 참여한 개인 헌혈

자는 지역 내 전체 헌혈자 중 약 75%에 해당하며, 혈액 수급의 큰 축을 담당한다. 차량 결함, 참여 단체 사정에 따른 헌혈 취소가 빈번히 발생하는 단체 헌혈과 달리, 헌혈의 집은 몇몇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상시 운영하여 혈액 수급에 있어 그 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자 개인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혈액원 차원에서도 헌혈 증진을 통한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등 지자체와 협업체 혈액 재고 급감 시 재난 문자 발송, 광주·전남 지역 27개 지자체 헌혈 권장 조례 제정, 지자체 헌혈 증진 예산 배정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또한 동절기 헌혈 증진을 위한 직원 참여 캠페인, 헌혈자 대상 특별 기념품 증정 및 문화이벤트 초청 등 프로모션 시행, 다회 헌혈자 대상 내외부 표창 대상자 추천 등 내부 진흥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연내에는 지역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헌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헌혈자 예우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며, 이웃을 돕는 값진 생명 나눔이다. 헌혈 참여에 관심이 있다면 대한적십자사 공식 어플리케이션 '레드크넥트'를 활용하여 헌혈의 집 위치 등 헌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지역 사회와 지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

고무신 한 켤레

기간에 들어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의의 공과 경쟁 상대의 과를 널리 알리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선을 넘어 분쟁에 이르게도 한다. 허위 사실 유포나 근거 없는 비방도 문제지만 선거인 또는 선거인 가족에 대한 기부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라고 해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을 어겼을 때는 공직 선거와 유사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모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금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난 것처럼 이 조항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기부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이하이더라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열 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

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에게 2만 원의 밥 한 그릇 얻어먹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냈다는 일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시가 7000원 상당의 풍기름 한 세트를 제공받고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거나, 한 상자에 2만 원하는 배다섯 상자를 받고 무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문 사례도 있다.

아주 오래 전 지금은 고인이 된 노인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A는 10만 원을 주고 B는 5만 원을 주기에 투표에서 A를 찍었다' 그 말을 듣고 차마 그 노인에게 훈계를 할 수는 없기에 그저 '잘 하셨소'라고 답을 하고 말았다. 못내 아쉬웠던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면 다음부터는 돈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을 뽑으라는 당부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던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최대 3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려주고 싶다.

이제는 조합장 선거가 '훈탁한 돈 선거'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고, 진정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서 말하는 농업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가해자 빠진 강제 징용 해법...일본 책임 다해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기업이 대신해 보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재단이 2018년 세 개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히로시마·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15명이다. 또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아홉 건을 비롯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의 양극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회적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밝혔다.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끝냈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나 배상 참여가 빠진 이러한 해법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거부하면 피고 기업 몰수자산 처분 강행, 제3자 변제의 효용성 논란 등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 일본과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가해 기업들의 피해 배상과 사과를 끈기 있게 설득하고, 일본 정부도 전향적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인 안전 위협하는 노후 경로당 방치 안 된다

노인들의 사망방안 광주 지역 경로당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로당 1348곳 중 50.4%(680곳)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이었다. 설치 후 10~20년 된 경로당도 491곳(36.4%)에 달했으며, 5~10년은 86곳(6.4%), 5년 미만은 91곳(6.8%)이었다. 광주 경로당 절반이 설치 20년을 넘었고 10년 이상 된 곳까지 포함하면 87%가 보수·점검 대상인 셈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엿그제 찾은 북구 광운노인정 당장은 금방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었다. 북구 동운경로당은 화장실 세 곳 중 두 곳이 고장나 사용할 수 없었다. 광산구 운수경로당 외부 화장실은 타일이 깨졌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이동과 활동에 불편을 주는 장애도 많았다. 동운경

로당을 비롯해 인근 수산경로당, 광운노인정의 경우 출입구 철제 문턱이 휠체어 등 이동 보행 장치의 진입을 막았다. 보행 불편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허들이나 다름 없었다. 일부 공간에는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어 호흡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다.

광주시가 난방·양극·운동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로당 활성화와 기능 보장 사업에 나섰지만, 노후 시설 정비의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노인들의 하소연이다. 사실상 광주 노인 인구의 21%(4만 6000여명)에 해당하는 경로당 회원이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노인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경로당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서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뿐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해 경로당이 명실상부한 노인 복지·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꿀벌은 꽃 색깔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얼마 전 지인과 얘기를 나누다 문득 꿀벌의 눈 구조와 시력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꿀벌이 꽃색을 인지하는지, 아니면 꽃 향기에 이끌려 날아오는지 아리송했다.

우선 '장문식의 산방일기·빈산엔 노랑꽃' (학교재·2001년)이라는 에세이집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서 생활했던 작가는 같은 제목의 글에서 "이른 봄과 늦가을 눈으로 얼룩진 산에는 노란색이 주류이고, 봄가을은 붉은 꽃, 청산에 피는 꽃은 희

을 요약하자면 꿀벌은 사람 눈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복합 눈을 갖고 있는데 자외선 영역까지 볼 수 있다. 결국 꿀벌은 꽃 색깔과 향기 모두를 활용해 꽃을 찾는다는 것. 바빠서 봄기운을 감지해 언 땅을 뚫고 노랑꽃을 피우는 봄꽃과 이를 찾아가는 꿀벌의 생명력은 경이롭기만 하다.

봄꽃 축제

복수초(福壽草)와 개복숭아(迎春花), 영춘화(迎春花), 장미꽃, 산수유처럼 이른 봄소식을 알리는 들꽃과 나무들은 한결같이 노랑꽃을 피운다. 이에 대해 작가는 "아직 신록이 피어나기 전, 메마른 배경일 때 멀리 있는 벌과 나비들의 눈에 띄기 쉬운 색이 노랑색임을 식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의 시작과 끝에는 노랑꽃만 핀다"고 설명한다.

3월 들어 산수유와 매화를 주제로 한 봄 축제가 4년 만에 열린다. '2023 광양매화 축제' (3월 10~19일)와 '제24회 구례 산수유꽃 축제' (3월 11~19일)다. 또 해남 달마산 둘레길을 걷는 '2023 해남 달마도 힐링 축제' (3월 25일)도 열릴 예정이다. 모진 겨울을 견디고 봄꽃을 피우는 생명들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우리를 역시 닮은꼴이다. 마음 설레는 봄날, 누구든 상춘(賞春)의 사부사부한 발걸음을 느리지 못할 듯 싶다.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 손잡고/ 섬진강 물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리라"(김용택 '봄날 전문')

한 발걸음을 느리지 못할 듯 싶다.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 손잡고/ 섬진강 물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리라"(김용택 '봄날 전문')

/송기동 예향부장 song@

기고



송남균 농협 전남검사국 팀장

고무신, 앞마당에서 휴장난하던 어릴 적 추억 속 혹은 빛바랜 과거 사진 속이나 남아있을 법한, 한때 부정선거의 상징으로써 몰래 오가던 곰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소중할 물건. 하지만 고무신이 우리 일상에서 사라졌을 거라는 생각은 오후다. 오랜 세월 턱없이 오른 물가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탓에 그 가치와 위상이 달라졌을 뿐, 고무신은 여전히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선거 때 주고받던 고무신은 훨씬 가볍고 전팔하기 쉬우며 은밀하기까지 한 '돈 봉투'로 모습을 바꿔 그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점점 늙고 무너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의 농촌사회가 마치 사라져가는 고무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오는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 운동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